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87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과 산림기술용역업의 업무 범위 및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기준의 공사비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림공학기술자 및 기능2급의 산림경영기술자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0조 관련 별표 3)

- 1) 산림공학기술자 및 기능2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 세부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2) 불분명한 산림공학 및 산림기능 교육과정을 정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국민의 불편 해소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기술용역업의 업무 범위 명확화(안 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4)

- 1) 산림기술용역업 중 종합업의 업무 범위에 “산림조사,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와 재해위험성 검토”를 추가하고, 산림기술용역업 중 전문업의 산림생태·공학 세부분야에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와 재해위험성 검토”를 추가하여 산림기술용역업 중 종합업 및 산림생태·공학 전문업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
- 2) 불명확한 산림기술용역업의 업무 범위로 인한 질의민원 및 업무혼란을 방지함으로써 발주청 및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기술용역업자의 과징금 세부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안 제20조제1항제3호의2 및 별표 4의2)

- 1)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매출액, 영업정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 2) 과징금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정지의 대체로 인한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업무 수행 유지가 기대됨.

라.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의 공사비 정의 명확화(안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5)

- 1)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에정금액을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에서

적용하는 공사비로 정의하여 배치기준의 적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분명한 공사비 정의로 인한 발주청 및 산림사업시행업자·산림기술용역업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

마.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명확화(안 제16조제1항)

- 1)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제2호)을 삭제함으로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설계 및 감리 대상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 2) 일정규모 미만의 산림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림사업시행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인용조문 수정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제2조제1항, 안 제13조제1항제1호)

- 1) 제2조제1항 중 임업기계장비의 정의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3”에서 “제2조제3호의4”로 수정함.
- 2) 제13조제1항제1호제다목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감리의 범위를 “5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정한 면적 이상”(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수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와 합의 전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3”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4”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타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라.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숲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 제18조제9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4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림청장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림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수납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별표 3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 종류	기술 등급	자격 요건	업무 범위
----------	----------	-------	-------

별표 3의 산림 경영 기술자의 기능 2급의 자격 요건란 중 “산림경영기술자 기능등급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을 “산림기능”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 제4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산림공학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3의2. ”산림기능 교육과정“이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등급 업무 범위와 관련되는 산림기술 교육과정을 말하며, 산림기능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종합업의 업무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된 표고(標高) 및 평균경사도 조사와 재해위험성 검토

3.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및 안전성 분석

별표 4 전문업의 산림 생태·공학의 업무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된 표고(標高) 및 평균경사도 조사와 재해위험성 검토

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감리 및 안전성 분석

가. 임도사업

나.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사업(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다. 사방사업

마. 산림복원사업

라.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에 관한 사업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비고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공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 관련)

1. 영업정지기간은 법 제18조제9항 전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영업정지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하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과징금 부과금액} = \text{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times \text{영업정지 일수} \times 0.15$

3. 제2호의 계산식 중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또는 휴업 등에 따라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기계장비”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3에 따른 임업기계장비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제13조(산림사업 설계·감리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말한다.		제13조(산림사업 설계·감리의 범위 등) ①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		1.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
다.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또는		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		-----
숲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		16조제1항 본문에서 정한		-----
꾸기사업		면적 이상의 산림병해충		-----
		방제사업		-----

<신 설>

라. ~ 카. (생 략)

2.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신 설>

라.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숲
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
기사업

마. ~ 타. (현행 라목부터 카
목까지와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 제18조제9항에 따른 과징금
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
다.

제14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
부) ① 산림청장이 법 제18조제
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
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
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림청장이 정
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
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
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제1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u> 3. (생략) ② ~ ⑥ (생략)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 5. (생략) ② · ③ (생략)	<u>없이 수납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u> 제1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 -----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u> 4.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연 락 처	(042) 481 - 8816